

# 산업안전보건법 핸드북

[www.kiha21.or.kr](http://www.kiha21.or.kr)



## Cover Story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30여 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신설·보완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보기 쉬운 요약정보집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핸드북

[www.kiha21.or.kr](http://www.kiha21.or.kr)



## Cover Story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30여 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신설·보완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보기 쉬운 요약정보집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핸드북



본 산업안전보건법 핸드북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2020년도 업무지원 자료입니다.

귀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의 구성은

- 관련법규 : 최근의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 용어정의 : 가급적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정의하였습니다.
- 법규요약 : 관련법규와 지침을 참조하여 요약한 자료입니다.
- 과태료 :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의 내용입니다.
- 첨부자료 : 별표, 서식, 지침 등의 자료입니다.

※ 책의 내용은 사업장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산업보건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최근 전부개정된 (개정일 : 산안법 2019.1.15. 시행령 2019.12.24. 시행규칙 2019.12.26., 시행일 : 산안법 2020.1.16., 2021.1.1., 2021.1.16. 시행령 2020.1.16., 2021.1.1., 2021.1.16. 시행규칙 2020.1.16., 2021.1.16. 기준) 법령의 개정일자에 맞추어 핸드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2020년 3월



## CONTENTS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재해의 정의, 산재 발생건수 보고	4
2.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7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조정자	10
4. 보건관리자	13
5. 산업보건의	16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8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
8. 안전보건관리규정	23
9. 보건조치	26
10. 유해 · 위험 방지 조치	27
11. 유해작업 도급 관련 조치(안전보건평가)	34
12. 정기 안전보건교육	41
13. 채용 시, 작업내용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43
14. 특별교육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5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47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직무교육	51
17. 안전검사	55
18. 석면	60
1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비치	65



## 산업안전보건법 핸드북

20. 작업환경측정	75
21.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81
22. 특별관리물질	85
23. 건강진단	88
24. 근로자의 건강관리, 건강증진지도	98
25.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101
26.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105
27.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108
2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109
29. 청력보존프로그램	110
30. 호흡기보호프로그램	111
31.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113
32. 위험성평가	115
33. 서류의 보존	117

### ※ 첨부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20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26
3. 과태료의 부과기준(2019.12.24)	131
4. 벌칙(2019.1.15.)	146

#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재해의 정의, 산재 발생건수 보고

## 1 관련 법규

<b>산업안전보건법</b>	<p>제1조(목적) 이 법은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p> <p>제61조(사업주의 작업중지)</p> <p>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2조(근로자의 작업중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li> <li>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i> <li>③ 관리감독자들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li> </ul> <p>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자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li> </ul> <p>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됨</li> <li>2. 사업주는 산재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함</li> <li>3. 산재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li> </ol>	<b>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의무</b>
<b>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b>		

<b>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b>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제8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b>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b>		
<b>훈령 예규 고시</b>		
<b>기타</b>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발췌	

## 2 용어 정의

###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자재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  
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2.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법규 요약

### 1. 법의 목적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

### 2. 자료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 발생건수 등 공표를 위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3. 보고

가.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나. 중대재해 : 전화, 팩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자체 없이

다. 중대재해 보고내용

-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4. 기록

- 가.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나.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다.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라. 재해 재발방지 계획
- \* 관련서식 : 시행규칙 상의 서식1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5. 보존기간 : 3년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3,000	3,000	3,000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위법이 산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 5 관련 자료

1.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별지 제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관련 내용

## 2.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형태 · 색채 및 용도 등)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 · 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 2 용어 정의

1. 안전보건표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
2.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 3 법규 요약

1. 법령 요지의 게시 : 산안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가.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 · 안내 또는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어로 작성
2. 안전 · 보건표지 부착 및 설치
  - 가.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 · 안내 또는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어로 작성
3. 안전 · 보건표지의 종류 · 형태 및 용도
  - 가. 금지표지
    - 1) 종류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2) 색채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 나. 경고표지

1) 종류1 :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발암성 · 변이원성 · 생식독성 · 전신독성 · 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 색채1 :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검은색도 가능)

3) 종류2 :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광선 경고, 위험장소 경고

4) 색채2 :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 다. 지시표지

1) 종류 :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2) 색채 :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 라. 안내표지

1) 종류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2) 색채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 마. 관계자 외 출입금지

1) 종류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2) 색채 :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은색

### 4. 안전보건표지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색도기준과 별표9에 따른 기본모형에 따라 제작

나.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다.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

라.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

마. 야간에 필요한 안전 · 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여 제작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 부착 하지 않거나 설치 · 부착된 안전보건 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개소당	10	30	30

## 5 관련 자료

- 시행규칙 중, 1.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2.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 · 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3.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4.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조정자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 2 용어 정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 사업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업무 수행
2. 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도급인이 지정함.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4. 안전보건조정자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별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 3 법규 요약

#### 1. 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 가. 시행령 별표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나. 시행령 별표2 제23호 부터 제32호까지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다. 공시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시행령 별표2 제33호)
- 라.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시행령 별표2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

#### 2. 관리책임자 선임 자격

- 가. 대표 상주 시 : 대표
- 나. 대표 비상주 시 : 부사장, 지점장, 공장장, 현장소장 등

#### 3. 관리책임자의 업무

- 가. 총괄 · 관리업무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재예방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 관리 등
- 나. 지도 · 감독업무 :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산재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재에 관한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등

#### 4. 관리감독자의 업무

- 가.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나.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 다.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라.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 마. 사업장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 1)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2)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4) 산업보건의
- 바.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업무
- 사.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나.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 다.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관계수급인 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 ·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마.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시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 5 관련 자료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4. 보건관리자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 장비 지원)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1항2호	

### 2 용어 정의

#### 1.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  
하는 자

### 3 법규 요약

#### 1.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 가. 시행령 별표5에 의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나. 선임 대상으로 추가된 업종
  - 2020년부터 추가 : 운수 및 창고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포함)

#### 2. 보건관리자의 업무

-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나.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마.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산업보건의의 직무  
바.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사.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  
아.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자.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파.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하.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3. 선임 신고

- 가. 사업주는 보건관리자 선임 시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나.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겸직 가능, 300인 이상 사업장 겸직 불가

### 4. 보건관리 업무 위탁

- :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해당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  
    리전문기관과 업종별 ·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하며, 위탁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음.  
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300인 이상 사업장 보건관리  
    위탁 가능)  
나.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 4 과태료 ▶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	500	500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300	400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 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보건관리자의 증원 · 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 5 관련 자료

시행령 중,

[별표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

[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

시행규칙 중,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5. 산업보건의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 2 용어 정의

#### 1. 산업보건의란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지도를 위해 사업주가 선임한 의사

### 3 법규 요약

#### 1. 선임 대상사업장

- 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 단,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였거나 보건관리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됨.
- 나.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 가능

#### 2. 산업보건의의 자격

- :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3. 산업보건의의 직무

- 가. 건강진단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진환,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 나. 근로자 건강장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다.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의학적 조치

#### 4. 선임신고

- 가.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산업보건의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 5 관련 자료

시행령 중,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시행규칙 중,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 2 용어 정의

####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3 법규 요약

#### 1. 대상사업장

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가.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위탁

가. 시행령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준용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 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근로자위원회의 지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 2 용어 정의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하는 위원회

### 3 법규 요약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 농업 11. 어업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의 종류	규모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도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35조)

### 가. 근로자위원

- 1) 근로자대표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  
의 수를 제외한 수)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나. 사용자위원

-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1명
-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1명
-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 가능)

## 3. 회의개최

### 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1)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 2)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

### 나. 의결 방법: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대표자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가 출석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 직무 대리 가능)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7) 중대한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라. 미의결 사항 등의 처리 : 다음의 경우 양측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 1)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 2)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3)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함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내용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다.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라. 그 밖의 토의사항

5. 회의 결과 등의 공지

가. 내용 : 심의·의결 내용 및 중재 결정 내용

나. 방법 : 사내방송 사내보·게시·정례조회 등

다. 시기 : 신속히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포함)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제외)	500	500	500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포함)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 당)	50	25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사업주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 8. 안전보건관리규정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별표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 2 용어 정의

#### 1. 안전보건관리규정

: 해당 사업장의 업종, 기계설비, 생산공정 등의 실태에 상응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과 동등한 가치의 사내 규범임

### 3 법규 요약

#### 1. 대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2. 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시행규칙 별표 3]

##### 가. 총칙

-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목적 및 적용 범위
-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관련 사항
- 3)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관련 사항

#####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1)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 관련 사항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 운영 관련 사항
-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 관련 사항
- 5) 작업자취자 배치 관련 사항

다. 안전보건교육

-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관련 사항

라. 작업장 안전관리

- 1)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 2)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관련 사항
- 3) 유해 ·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지울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 관련 사항
- 4)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관련 사항
- 5)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관련 사항
- 6)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7) 안전표지 · 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안전관리 관련 사항

마. 작업장 보건관리

- 1)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 유해물질 취급에 관한 사항
- 3)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4)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 5) 보건표지 · 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보건관리 관련 사항

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1)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2)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 · 관리 관련 사항

사.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1)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 절차에 관한 사항
- 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아. 보직

- 1)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 · 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2) 안전 · 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사항 : 사업장의 규모 · 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 추가나 그 사업장과 무관한 사항은 제외 가능

### 3. 작성·변경 절차

- 가. 작성·변경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나.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 가능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및 게시 등

- 가.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함
- 나. 규정을 작성하여 게시,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 5 관련 자료

### 시행규칙 중,

[별표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9. 보건 조치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 2 용어 정의

#### 1. 보건조치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

#### 2. 보건조치 준수

: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사항을 지켜야 함

### 3 법규 요약

#### 1. 보건조치 : 다음 사항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가.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흠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

나.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

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

라.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

마.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바.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건강장해

#### 2. 근로자의 보건조치 준수

: 근로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보건조치 사항을 지켜야 함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조치 시향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5	10	15

## 10. 유해·위험 방지 조치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7조(안전보건진단)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4조(종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5조(종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6조(종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별지 제18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별지 제19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 [별지 제20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작정) 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 [별지 제25호서식] (종합·안전·보건)진단명령서 [별지 제26호서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 2 용어 정의

1. 안전조치 : 다음 사항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
  - 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
  - 다.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 나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며,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
4. 공정안전보고서 :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5. 안전보건진단 :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시로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진단
6. 안전보건개선계획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개선계획
  - 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2배 이상인 사업장
  - 나.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다.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마.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7. 중대산업사고 : 사업장에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3 법규 요약

1. 안전조치 : 아래 항목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가.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
  - 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
  - 다.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
  - 라.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
  - 마. 근로자가 다음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재
    -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2)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
  - 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화
  - 나. 휴게시간의 연장
  - 다.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라.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가.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 기구 및 설비로서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다. 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 규정한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4. 공정안전보고서
  - 가. 제출 대상 사업
    - 1) 원유 정제처리업
    -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단,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취급물질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로 한정
      - 인화성 가스: 제조 · 취급 5톤, 저장 200톤 이상
      - 인화성 액체: 제조 · 취급 5톤, 저장 200톤 이상

- 4)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6)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
-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나. 제출 비대상 시설 및 설비

- 1) 원자력 설비
- 2) 군사시설
-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4) 도매 · 소매시설
-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
-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1) 공정안전자료
- 2) 공정위험성 평가서
- 3) 안전운전계획
- 4) 비상조치계획
-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가. 종합진단

- 1) 경영 ·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②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인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4) 유해 ·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① 기계 · 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② 폭발성 · 물반응성 · 자기반응성 ·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 성 액체 · 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③ 전기 · 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④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⑤ 그 밖에 기계 · 기구 · 설비 · 장치 · 구축물 · 시설물 · 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⑥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 · 습도 · 환기 · 소음 · 진동 · 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안전진단 : 위의 종합진단 내용 중 2), 3), 4) 항 1~5 및 5) 항 중 안전 관련 사항  
 다. 보건진단 : 위의 종합진단 내용 중 2), 3), 4) 항 6 및 5) 항 중 보건 관련 사항과 6), 7) 항

#### 4 과태료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고객의 푸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600	1,000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300	600	1,000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4호		30	150	3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30	150	300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6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	250	500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 위반 1건당)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 위반 1건당)	10  5	20  10	30  15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30	150	300
주락·붕괴·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4호		1,000	1,000	1,000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제1호	1)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0  150	1,500  300	1,5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4호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용역장의 7항 첨조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2)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4호		50	250	500

## 11. 유해작업 도급 관련 조치(안전보건평가)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 · 방법 및 기준 등)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 등)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 보건점검) 제83조(안전 · 보건 정보제공 등) [별지 제31호서식] 유해 · 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유해 · 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유해 · 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유해 · 위험작업 도급승인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 2 용어 정의

- 도급인** :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건설공사발주자 제외)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안전보건평가** : 사업장의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해 도급 시, 건강장해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평가

### 3 법규 요약

#### 1. 도급의 제한 및 승인

##### 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됨

###### 1) 도급금지 작업

- ① 도급작업
- ②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③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2) 도급허용 작업

- ①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②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 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3년 유효)을 받은 경우
- \* 도급허용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유효기간의 연장(3년 이내) 및 승인사항 변경에도 승인이 필요함

##### 나. 도급의 승인

: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다음과 같은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필요. 이 경우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종합평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유효기간의 연장(3년 이내) 및 승인사항 변경에도 승인이 필요함

-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도급인이 해당 화학 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
-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다.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재하청금지)

: 도급이 허용되거나 승인(연장 및 변경 승인 포함)된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 도급할 수 없음

##### 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함

#### 마. 안전보건평가의 주요 내용

-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바. 안전보건평가 업무 절차

평가의뢰 → 예비조사 → 평가 실시 → 평가보고서 제출

※ 안전보건평가는 도급승인신청 20 ~ 30일 전에 실시

※ 산안법 개정에 의거 2020.01.16일부터 안전보건평가 실시

(연락처 :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센터 환경위생팀 02-3284-5242, 5245)

###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 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함(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A. 도급인의 이행사항

-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 순회점검
- 3)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5) 다음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①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②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6) 위생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B.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함

#### 라.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다음 작업을 도급하는 사람은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1)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독성 등의 유해성 ·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안전보건규칙

별표1 및 별표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 증류탑 ·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2) 제1항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다음 작업

①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18에

따른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 토사 · 구축물 ·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마.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시행규칙 제6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혹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혹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를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혹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 2) 협의 사항

① 작업의 시작 시간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④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3)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후 결과 기록 · 보존

#### 3. 도급인의 안전 · 보건 조치 장소(시행규칙 제6조)

##### 가. 화재 · 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장소

1)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 · 용단작업

2) 인화성 액체를 취급 · 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 · 용단작업

3)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 · 용단작업

4)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 ·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 솟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 나.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다.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 라.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마. 밀폐공간

##### 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사.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 ·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4.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시행규칙 제7조)

- 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과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공표 대상 연도의 이듬해 3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함.
- 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도 가능)해야 함
- 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5. 도급승인 등의 절차 및 방법 (시행규칙 제75조)

- : 도급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도급승인 신청서, 연장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가.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나.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미 해당)
- 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위의 가항 및 다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도급승인 단계별 절차



#### 6. 도급승인 변경 사항

- 가. 도급공정
- 나.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 다. 도급기간(3년 미만의 기간으로 도급을 승인받고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

#### 7. 도급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가.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다.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한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한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다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다만,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다만,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0만원)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다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다만,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다만,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 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건설공사도급 인만 해당)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노사협의체가 심·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 수급인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 5 관련 자료

- [별지 제25호서식] (종합, 안전, 보건)진단명령서
- [별지 제31호서식] 유해 · 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유해 · 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유해 · 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유해 · 위험작업 도급승인서



## 12. 정기 안전보건교육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문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문제)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9-37호, 2019.7.9. 일부개정)

### 2 용어 정의

1.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3 법규 요약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의 문제
  - 전년도에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문제 가능
  - 근로자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안전보건교육 적용대상 확대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업종, 유해·위험물질 취급량 또는 유해·위험작업 실시 등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안전보건교육 문의 : 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사업팀(02-2046-0512~6)

### 3. 정기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 교육	사무직종사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정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li> </ul> </li> </ol>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li> <li>•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 능력 향상,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li> </ul> </li> </ul> </li> </ol> <p>(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교육시간의 1/3이하)</p>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분의 10 이상을 실시해야 함
- 2) 근로자(관리감독자 제외)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그 해당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0 50	20 250	50 500

#### 5 관련 자료

시행규칙 중,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9-37호, 2019.7.9. 일부개정)

## 13.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9-37호, 2019.7.9. 일부개정)

### 2 용어 정의

1. 채용 시,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교육

### 3 법규 요약

#### 1.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li> </ul>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li> <li>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li> <li>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li> <li>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li> <li>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li> </ul>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가능

※ 안전보건교육 문의 : 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사업팀(02-2046-0512~6)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5 관련 자료

시행규칙 중,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9-37호, 2019.7.9. 일부개정)



## 14. 특별교육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3항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9-37호, 2019.7.9일부개정)

### 2 용어 정의

- 특별교육** : 유해위험작업에 채용할 때와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3 법규 요약

#### 1.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특별 교육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제 40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제40호의 티워크레이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 8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특별교육을 하되,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해야 함
- 2.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증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 내용	시간
공 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직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 육 대상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2시간

※ 안전보건교육 문의 : 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사업팀(02-2046-0512~6)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5 관련 자료

시행규칙 중,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9-37호, 2019.7.9. 일부개정)

##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9-37호, 2019.7.9. 일부개정)

### 2 용어 정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다음의 업무를 담당
- 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라.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비.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아.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자.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차.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2. 안전보건교육기관 : 법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3 법규 요약

#### 1. 교육 대상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 관련 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 (단, 해당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나. 안전관리자
- 다. 보건관리자
-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직무교육 문의 : 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사업팀(02-2046-0512~6)

마. 다음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 ③ 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④ 법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⑤ 법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⑥ 법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2. 교육 시기

가. 신규 교육 : 해당 직위에 선임 또는 채용 후 3개월 내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

나. 보수 교육 : 신규 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 3.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 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발생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보건 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p>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음 · 분진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경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계 · 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0) 보건관리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경에 관한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종사자	<p>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석면조사 기관 종사자	<p>1) 석면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p>	<p>1) 석면관련법령및제도(법,「석면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 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 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 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 · 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 · 제거작업 및 석면 훌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 · 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p>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점검 기관 및 자율안전 검사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기계·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5) 기계·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3) 기계·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법 제175조 제6항제1호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 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 5 관련 자료

##### 시행규칙 중,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9-37호, 2019.7.9. 일부개정)

##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직무교육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9-37호, 2019.7.9. 일부개정)

### 2 용어 정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 배달종사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  
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업자의 종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
  - 가맹본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가맹본부에 가입하여  
가맹점사업을 하는 사람
- \* 직무교육 문의 : 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사업팀(02-2046-0512~6)

### 3 법규 요약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대상)

#####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 ① 보험 모집인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인
  - ②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③ 학습지 교사
  - ④ 골프장 캐디
  - ⑤ 택배인1 :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및 배송하는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⑥ 택배인2 :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⑦ 대출모집인
  -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⑨ 대리기사 :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나.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다.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음

#### 2.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골프장 캐디, 택배인1, 택배인2, 대리기사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

##### 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

##### 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 ① 교육 과정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함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③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이 책 12장의 특별교육의 내용과 동일

#### 4.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법인 및 사업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5. 가맹본부의 산재 예방 조치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함

가.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 공급하는 설비 · 기계 및 원자재나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6.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가.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나.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다.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라.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7. 산재 예방 조치 시행 대상 가맹본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등록된 것)상 업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

가.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나.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

#### 8.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가. 가맹계약서의 관계 서류에 포함하여 제공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비 · 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때에 제공

다.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 훈련 시에 제공

라.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기 · 수시 방문지도 시에 제공

마.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500	700	1,000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500	700	1,000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기업사업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2항제1호		1,500	2,000	3,000

#### 5 관련 자료

시행규칙 중,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9-37호, 2019.7.9. 일부개정)

## 17. 안전검사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제95조(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제96조(안전검사기관)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 대상기계등)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별지 제6호서식] 지정신청서(자율안전검사기관·안전검사기관 등) [별지 제8호서식] 변경신청서(자율안전검사기관·안전검사기관 등) [별지 제50호서식] 안전검사 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별지 제52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별지 제54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1호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 고시 제2020-43호 안전검사 고시 제2020-42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2 용어 정의

1. 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 실시하는 검사
2. 자율검사 : 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 주기, 검사합격표시방법 등을 종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실시하는 검사

## 3 법규 요약

1.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시행령 제78조)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 다. 크레인(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곤돌라
  - 사.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 아.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 자. 률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 차.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
  - 카.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 타. 컨베이어
  - 파. 산업용 로봇
2. 안전검사의 면제
  - :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점검을 받은 경우
  -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
  -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 다. 「광산안전법」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
  - 라.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
  - 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검사
  - 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
  - 아. 「전기사업법」에 따른 검사
  - 자. 「항만법」에 따른 검사

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

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 3. 안전검사의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안전검사신청서) 참조]

#### 가. 안전검사 신청 대상

: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나. 안전검사 신청시기

: 검사주기 만료일 30일전 제출

다. 안전검사 기간 : 30일이내

#### 라. 안전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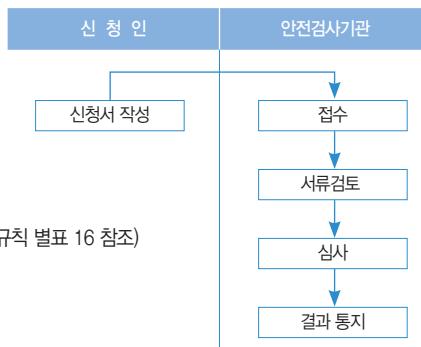
-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 합격표시 및 합격증명서 발급(시행규칙 별표 16 참조)

-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불합격통지서 발급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참조)



### 4. 안전검사의 주기,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시행규칙 제126조)

가.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 사용 시는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나.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 설치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5. 검사원의 자격(시행규칙 제130조)

가.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나.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다.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라.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에서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 졸업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라항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에서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 졸업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전기 또는 전자·화공 관련 학과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사. 법 제98조제1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이수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6. 자율검사 프로그램(시행규칙 제132조)

##### 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요건

-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 2) 검사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 3) 안전검사 주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기(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 4) 자율검사 프로그램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 나.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신청

- 1) 신청기관 : 안전보건공단
- 2) 제출서식 : 자율검사프로그램 안정신청서 [별지 제52호 서식]

다.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의 유효기간 : 2년

#### 7.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가. 지정요건 : 시행령[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참조

##### 나. 지정신청서 제출처 및 서류

- 1) 제출처 :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2) 제출서류 :  
 정관, 인력별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시설·장비명세서, 사업계획서 등

##### 다. 업무수행기준

- 1) 안전검사기준 미충족 사항 발견 시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사업주에게 통보
- 2) 검사업무의 수행결과 기록·관리

라. 안전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7호)

- 1) 실적보고 : 분기마다 다음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 실적 보고  
(제출처 : 고용노동부장관)

- 2) 결과의 보존 :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결과서 3년간 보존

마. 안전검사 수수료(국소배기장치,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53호)

후드배기유량	금액
150m <sup>3</sup> /min 이하	54,000원
500m <sup>3</sup> /min 이하	76,000원
500m <sup>3</sup> /min 초과	76,000원에 500m <sup>3</sup> /min을 초과한 500m <sup>3</sup> /min마다 7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 당)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200	600	1,000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대상 기계 등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 당)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 당)	300	600	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 당)	300	600	1,000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 당)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600	1,000

## 5 관련 자료

시행령 중,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

시행규칙 중,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별지제6호서식] 지정신청서(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등)

[별지제8호서식] 변경신청서(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등)

[별지제50호서식] 안전검사 신청서

[별지제51호서식]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별지제52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별지제53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별지제54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1호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 고시

제2020-43호 안전검사 고시

제2020-42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18. 석면

### 1 용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제120조(석면조사기관)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2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제93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제17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제179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제18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제181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제18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원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4조(작업 중지) 제481조(석면분진의 흘날림 방지 등)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제486조(작업성 질병의 주지) 제487조(유지·관리) 제488조(일반석면조사) <개정 2019.12.26.>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개정 2019.12.26.> 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개정 2019.12.26.> 제496조(석면함유 재자물 등의 처리) [전문개정 2019. 1. 31.] 제497조(재자물의 흘날림 방지) <개정 2012.3.5.> [별지 제74호서식]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석면해체·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 석면해체·제거업(변경)등록증 [별지 제77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별지 제78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별지 제79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별지 제81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훈령 예규 고시	석면해체 · 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호)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환경부 고시 제2018-23호, 타법개정 2018.2.9.)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2012. 4. 27. 제정]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타법개정]	
기타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참조	

## 2 용어 정의

1. 일반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해당 건축물, 설비의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조사해야 하는 다음 사항으로 조사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 가. 해당 건축물,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 나. 해당 건축물,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2. 기관석면조사 :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 · 설비소유주 등은 석면조사기관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함. 단, 석면함유 여부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을 통해 명백한 경우 기관석면조사 생략 가능
  - 가. 일반석면조사 조사 사항
  - 나. 해당 건축물,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 1.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하면 일반석면조사나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며,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설비를 철거, 해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 이행명령이나 작업중지 명령 기능
3. 석면해체 · 제거작업 :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 · 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흘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
4.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 건축물이나 설비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그 밖의 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바르거나 입혀진 물질이나 자재
5. 보온재 : 건축물이나 설비의 파이프, 덕트, 보일러, 탱크 등의 내외부에 보온, 단열을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
6. 지역시료 채취 : 시료채취기를 작업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것
7. 고형시료 채취 : 석면조사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의 일부분을 채취하는 것
8. 정도관리 : 기관석면조사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 · 교육 및 그 밖에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
9. 안전성 평가 :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

### 3 법규 요약

#### 1. 기관석면조사 대상

- 가.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이 50m<sup>2</sup> 이상, 그 건축물의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이 50m<sup>2</sup> 이상인 경우
- 나. 주택의 연면적 합이 200m<sup>2</sup> 이상이며, 그 주택의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이 200m<sup>2</sup> 이상인 경우
- 다. 설비의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의 자재(물질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m<sup>2</sup>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sup>3</sup> 이상인 경우
  - 1) 단열재
  - 2) 보온재
  - 3) 분무재
  - 4) 내화피복재
  - 5) 개스켓(누설방지재)
  - 6) 패킹재(틈막이재)
  - 7) 실링재(액상 메움재)
- 8) 그 밖에 1)항부터 2)항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라.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 2.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 · 제거 대상

- 가. 철거 · 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m<sup>2</sup> 이상인 경우
- 나. 석면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다. 석면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여 함유된 위의 '1.기관석면조사' 다행 (분무재,내화피복재 제외)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sup>2</sup>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sup>3</sup> 이상인 경우
- 라. 파이프 보온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 3. 조사 결과 석면자재면적 1~49m<sup>2</sup>이면 신고의무가 없으며 직접 해체 · 제거 가능. 단, 석면해체 · 제거의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4.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원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0.01개/cc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건축물,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해서는 안 됨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2호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200	300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 제1항제1호	1) 소유의 단독 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000	1,500
		2) 그 밖의 경우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3,000	5,000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3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한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5	10	15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4호		100	200	300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 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 5 관련 자료

시행령 중.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28]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

시행규칙 중.

[별지 제74호서식]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석면해체 · 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 석면해체 · 제거업 (변경)등록증

[별지 제77호서식]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서

[별지 제78호서식] 석면해체 · 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별지 제79호서식] 석면해체 · 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별지 제81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석면해체 · 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호)

석면함유기능물질 조사 ·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환경부 고시 제2018-23호, 타법개정 2018.2.9.)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환경부 고시 제2012-79호, 2012. 4. 27. 제정]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환경부 고시 제2018-23호, 2018. 2. 9., 타법개정]

## 1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비치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MSDS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MSDS의 제공) 제112조(MSDS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3조(국외제조사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제114조(MSDS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MSDS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MSDS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MSDS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156조(MSDS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제157조(MSDS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제158조(자료의 열람)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MSDS의 항목 및 제출시기) 제160조(MSDS의 제공 방법)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제166조(국외제조사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제167조(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168조(MSDS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제169조(MSDS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제171조(MSDS 관련 자료의 제공) 부칙 제9조(MSDS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별지 제63호서식] MSDS 비공개승인·연장승인 신청서 [별지 제64호서식] MSDS 비공개승인·연장승인 결과 통지서 [별지 제65호서식] MSDS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별지 제66호서식] MSDS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67호서식] MSDS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	
훈령 예규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 2 용어 정의

1. 물질안전보건자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MSDS대상물질이라 함)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가 화학물질의 제품명, 명칭, 함유량, 안전보건 취급 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과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적어놓은 자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2. 물리화학적 특성 등
  - 가. 물리 · 화학적 특성
  - 나. 독성에 관한 정보
  - 다. 폭발 · 화재 시의 대처방법
  - 라. 응급조치 요령
  - 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3 법규 요약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 가. 작성 · 제출 및 제공 의무 : MSDS대상물질을 제조(국외제조 포함), 수입하려는 자는 자료의 출처를 포함한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MSDS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해당 물질을 양도,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특히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 나. MSDS대상물질 취급자의 의무
    - 1) 제공받은 MSDS를 대상물질 취급작업장 내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비치
    - 2)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3) 취급근로자에 대한 교육(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며, 교육 후 교육시기, 내용, 방법 등을 기록해야 함)

※ MSDS에 관한 교육의 시기

    - ① MSDS대상물질을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② 새로운 MSDS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③ 유해성 ·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4) 대상물질 취급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 게시
    - 5)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대상물질 양도 · 제공자 또는 취급 사업주에게 MSDS에 기재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 등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다. MSDS 작성 시 포함사항

- 1) 대상물질의 명칭
-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3)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4)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MSDS 대상물질 분류기준

(시행규칙 별표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참조)

- 1)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산화성 가스 등 16종
- 2) 건강 및 환경 유해성 :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발암성, 수생환경 유해성, 오존층 유해성 등 13종
- 3) 물리적 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

##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  
되는 경우 포함)
-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됨
-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바. 게시 및 비치 장소: 대상물질 취급 작업장 내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비치하거나 쉽게 확인 가능한 전산장비 비치

사. MSDS대상물질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포함할 사항

- 1) 제품명
-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아. 변경이 필요한 MSDS의 항목 및 제출시기

-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2) MSDS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4) 제출 시기 : 자체 없이

## 2. MSDS의 일부 비공개 승인

가.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을 MSDS에 적지 않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음.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공개해야 함.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MSDS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비공개 승인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다. 승인의 유효기간 : 승인일부터 5년( 5년 단위로 연장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

라. 신청인은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마. 승인 또는 연장승인 취소 대상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바. 다음의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비공개승인 대상인 MSDS 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한 자에게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하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 3) 산업보건의
- 4) 근로자대표

- 5) 역학조사(疫學調查)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사.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기재사항
-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2) 대체자료
  -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4) 대체자료의 MSDS
  - 5)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MSDS  
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의 1항, 6항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 가능
3. 경고표지 :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가. 경고표지 내용 : 아래의 내용을 표시하되,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 내용은 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 가능
- 1) 명칭 : 제품명
  - 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3)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4)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알리는 유의사항
  - 6) 공급자 정보 : 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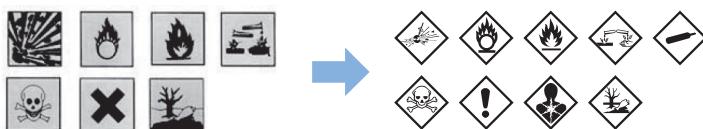
(명 칭)	
(그림문자 예시)	(신 호 어)
	유해·위험 문구 :
공급자 정보 :	예방조치 문구 :

**나. 규격****1)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 $\geq 500\text{ l}$	450cm <sup>2</sup> 이상
200 l $\leq$ 용량 < 500 l	300cm <sup>2</sup> 이상
50 l $\leq$ 용량 < 200 l	180cm <sup>2</sup> 이상
5 l $\leq$ 용량 < 50 l	90cm <sup>2</sup> 이상
용량 < 5 l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2) 그림문자의 크기**

-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cm<sup>2</sup> 이상이어야 한다.

**다. 그림문자****라. 경고표시 제외사항**

-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
- 5)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

**3. MSDS의 작성 · 제출 · 제공 및 일부 비공개에 관한 특례 기준일**

- 가. MSDS대상물질의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 나. MSDS대상물질의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 다. MSDS대상물질의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 라. MSDS대상물질의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 마. MSDS대상물질의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4 과태료**

## - 시행령[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5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00	500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6호		500	500	50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7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시장점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	100	500
			10	20	5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7호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100  10	200  20	500  5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 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 안전보건 자료 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6항제9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 수입한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 개소당)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 · 제공자로부터 변경된 물질안 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	100  20	300  30
승인을 받지 않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8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 수입하는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한 경우  3) 제조 · 수입한자가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가 아닌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	200  500  200	500  500  500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시 영업비밀과 관련 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물질 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9호		500	5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험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0호		100	200	500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1호		500	500	500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12호		100	200	50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3호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10	20	50
법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 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0호		50	1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종류)	법 제175조 제6항제11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양도·제공 사업장 1개소당)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물질 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한 경우(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50	100	30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50	100	300

## 5 관련 자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20. 작업환경측정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제241조(서류의 보존)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별지 제82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하반기) [별지 제83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하반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훈령 예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기타		

### 2 용어 정의

1.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
2.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3 법규 요약

####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가.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나. 작업환경측정을 제외하는 작업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발암성 물질 취급 작업 제외). 단,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과 안전보건규칙 별표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은 임시 작업 및 단시간작업이라도 측정 대상임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4)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다. 안전보건진단 시 작업장의 전체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측정 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첨부1 참조)

가. 화학적인자

1) 유기화합물 114종, 금속류 24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상태 물질류 15종(중량비율 혹은 용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도 포함)

2)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2. 디아니시딘과 그 염 3. 디클로로벤자린과 그 염 4. 베릴룸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 6.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7. 염화비닐 8. 콜타르피치 휘발물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10. 크롬산아연  
11.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12. 황화니켈류 13. 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14. 제5호의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15. 그 밖에 보건 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3) 금속가공유

나. 물리적인자(2종)

1) 8시간 시간기종평균 80dB 이상의 소음

2) 고열(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 다. 분진(7종)

## 1) 광물성 분진 :

- ① 규산(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
- ② 규산염(소우프스톤, 운모, 포틀랜드 시멘트, 활석(석면 제외), 흑연)
- ③ 그 밖의 광물성 분진

## 2) 곡물 분진

## 3) 면분진

## 4) 목재 분진

## 5) 용접 흙

## 6) 유리섬유

## 7) 석면 분진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3. 작업환경측정주기

가.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나. 1년에 1회 이상 측정하는 경우

## 1) 측정시기 : 직전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이후

## 2) 측정대상

- ①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②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다.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는 경우

## 1) 측정시기 : 직전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이후

## 2) 측정대상

- ①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85dB 이상
- ② 한가지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초과

라.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는 경우

## 1) 측정시기 : 직전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이후

## 2) 측정대상

- ① 시행규칙 별표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시행규칙 별표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진 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1년에 1회], [6개월에 1회]는 [연중 1회], [반기중 1회]를 의미 (회계연도 개념)

※ [3개월에 1회]는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를 의미 (기한(期限)의 개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A. 특별관리물질 :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2 참조)

B. 허가대상 유해물질 :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제조 ·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시행령 제88조 및 위의 박스 참조)

#### 4. 작업환경측정 방법

- 가. 작업환경측정 전 예비조사 실시
- 나.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 다.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히 기록)

#### 5. 작업환경측정 입회 및 설명회

- 가. 입회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 나. 결과 설명회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요구 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

#### 6. 작업환경측정 보고

- 가. 사업주가 측정을 한 경우
  - :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만, 시료분석·평가에 시간이 걸려 30일 이내 보고가 어려운 사업주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 연장 가능
- 나. 지정측정기관이 측정을 한 경우
  - :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만, 시료분석·평가에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지정측정기관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 연장 가능
-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 설비의 설치 ·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7. 서류의 보존

- 가.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해야 함.
  - 단,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 연장 가능.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5년, 고용노동부 고시물질 30년)
-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5년, 고용노동부 고시물질 30년)

- 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
- 다.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 설비의 소유주 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 종료 시까지 보존.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
- 라.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
- 마.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
- 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
- 사. 위의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로 보존 가능

## 8. 작업환경측정 결과조치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함

### 4 과태료 – 시행령[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6호	측정 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3호		100	300	500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4호		500	500	500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 300	150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5호		100	3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00	300	500

## 5 관련 자료

시행령 중,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시행규칙 중,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별지 제82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하반기)

[별지 제83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하반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21.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예규고시	
기타	

### 2 용어 정의

1.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 작업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함

### 3 법규 요약

1. 시행규칙[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시행규칙 제145조제1항 관련)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기종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m³	ppm	mg/m³
1. 6가크롬 [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불용성 수용성	0.01		
		0.05		
2. 납 [7439-92-1] 및 그 무기화합 물 (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0.05		
3. 니켈 [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 로 한정한다)(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0.2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0.001			
5.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68-12-2)	10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50			
7. 1,2-디클로로프로판 (1,2-Dichloro propane; 78-87-5)	10		110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 합물 (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1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기종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m <sup>3</sup>	ppm	mg/m <sup>3</sup>
9. 메탄올(Methanol; 67-56-1)	200		250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0.005			
11. 베릴륨 [7440-41-7] 및 그 화합물 (Beryllium and its compounds)		0.002		0.01
12. 벤젠(Benzene; 71-43-2)	0.5		2.5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2		10	
14. 2-브로모프로판 (2-Bromopropane; 75-26-3)	1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1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1			
17. 석면(제조 ·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Asbestos; 1332-21-4 등)		0.1개/cm <sup>3</sup>		
18. 수은 [7439-97-6] 및 그 무기화 합물 (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0.025		
19. 스티렌(Styrene; 100-42-5)	20		40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25		50	
21. 아닐린(Amiline; 62-53-3)	2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2			
23.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25		35	
24. 염소(Chlorine; 7782-50-5)	0.5		1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1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1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30		200	
28. 카드뮴 [7440-43-9] 및 그 화합물 (Cadmium and its compounds)		0.01 (호흡성 분진인 경우 0.002)		
29. 코발트 [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 (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0.02		
30. 콜타르피치 [65996-93-2] 휘발 물 (Coal tar pitch volatiles)		0.2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기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m <sup>3</sup>	ppm	mg/m <sup>3</sup>
31. 톨루엔(Toluene; 108-88-3)	50		150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0.005		0.02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0.005		0.02	
3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10			
35.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79-01-6)	10		25	
36.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0.3			
37. n-헥산(n-Hexane; 110-54-3)	50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0.2		0.6

#### ※비고

1. "시간기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TWA \text{ 산출값} = \frac{C_1 \cdot T_1 + C_2 \cdot T_2 + \dots + C_n \cdot T_n}{8}$$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m<sup>3</sup> 또는 개/cm<sup>3</sup>)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기중평균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기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2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3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3.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4 과태료 – 시행령[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작업장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 5 관련 자료

- 시행령  
[별표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시행규칙  
[별표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 22. 특별관리물질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420조 6(정의)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훈령예규고시	
기타	

### 2 용어 정의

1. 특별관리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

### 3 법규 요약

1.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일지
2. 특별관리물질 고지 :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3. 특별관리물질 종류(37종)

연번	유해인자	CMR물질 독성분류			혼합물질 관리범위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1	벤젠(71-43-2)	1A	1B		≥ 0.1%
2	1,3-부타디엔(106-99-0)	1A	1B		≥ 0.1%
3	사염화탄소(56-23-5)	1B			≥ 0.1%
4	포름알데히드(50-00-0)	1A	2		≥ 0.1%
5	니켈 및 그 화합물(7440-02-0)	1A (니켈금속 2)	1B (니켈카르보닐)		≥ 0.1%
6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삼산화안티몬(1309-64-4)만 특별관리)	1B(생산) 2(취급 및 사용물)			≥ 0.1%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7440-43-9)	1A	2	2	≥ 0.1%
8	크롬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18540-29-9)만 특별관리)	1A			≥ 0.1%
9	산화에틸렌(75-21-8)	1A	1B		≥ 0.1%
10	1-브로모프로판(106-94-5)	2		1B	≥ 0.3%
11	2-브로모프로판(75-26-3)			1A	≥ 0.3%
12	에피클로로히드린(106-89-8)	1B			≥ 0.1%
13	트리클로로에틸렌(79-01-6)	1A	2		≥ 0.1%
14	페놀(108-95-2)		2		≥ 0.3%
15	납 및 그 무기화합물(7439-92-1)	1B (납 금속 2)		1A	≥ 0.3%
16	황산(pH 2.0이하인 강산)(7664-93-9)	1A(mist)			≥ 0.1%
17	수은 및 그 화합물(7439-97-6)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제외)			1B	≥ 0.3%
18	디니트로톨루엔(25321-14-6)	1B	2	2	≥ 0.1%
19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127-19-5)			1B	≥ 0.3%
20	디메틸포름아미드(68-12-2)			1B	≥ 0.3%
21	2-메톡시에탄올(109-86-4)			1B	≥ 0.3%
22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110-49-6)			1B	≥ 0.3%
23	스토다드 솔벤트(8052-41-3)	1B	1B	1B	≥ 0.1%

연번	유해인자	CMR물질 독성분류			총합물질 관리범위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24	아크릴로니트릴(107-13-1)	1B			≥ 0.1%
25	아크릴아미드(79-06-1)	1B	1B	2	≥ 0.1%
26	2-에톡시에탄올(110-80-5)			1B	≥ 0.3%
2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111-15-9)			1B	≥ 0.3%
28	에틸렌이민(151-56-4)	1B	1B		≥ 0.1%
29	2,3-에폭시-1-프로판올(556-52-5)	1B	2	1B	≥ 0.1%
30	1,2-에폭시프로판(75-56-9)	1B	1B		≥ 0.1%
31	이염화에틸렌(107-06-2)	1B			≥ 0.1%
32	1,2,3-트리클로로프로판(96-18-4)	1B		1B	≥ 0.1%
33	퍼클로로에틸렌(127-18-4)	1B			≥ 0.1%
34	프로필렌 이민(75-55-8)	1B			≥ 0.1%
35	하이드라진(302-01-2)	1B			≥ 0.1%
36	황산디메틸(77-78-1)	1A	2		≥ 0.1%
37	1,2-디클로로프로판 (78-87-5)	1A			≥ 0.1%

#### 4 관련 자료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23. 건강진단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인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208조(건강진단비용)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별표 24]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훈령 예규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2019-27호) <개정 2019.4.16.>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2016-32호) <일부개정 2016.7.28.>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137호) <개정 2018.01.30>

## 2 용어 정의

1. 일반건강진단 : 상시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 시행규칙 별표22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에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하는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종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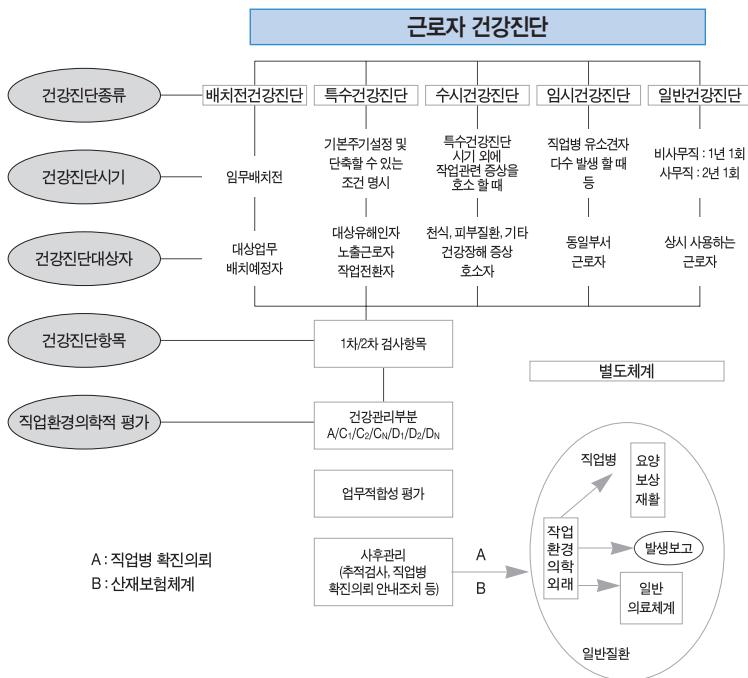
## 3 법규 요약

### 1. 개요

- 가.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직업성질환 발생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질환을 초기단계에서 찾아내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법 제129,130,132조)
-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5종류)이 있음

###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및 대상

- 가.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 시기 및 주기



### 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시기 등

#### 가. 일반건강진단

1) 질병의 조기 발견 및 현 종사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공법에 의한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증복검사항목에 한함)

3) 실시기관 : 일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 4) 검사항목

- ① 과거병력 · 작업경력 및 자각 · 타각증상(시진 · 촉진 · 청진 및 문진)
- ② 혈압 · 혈당 · 요당 · 요단백 및 빈혈검사

- ③ 체중 · 시력 및 청력
  - ④ 흉부방사선 촬영
  - ⑤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 ※ 혈당, γ-GTP 및 총콜레스테롤을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한함

#### 5) 실시방법

- :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 검사항목 ·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함

#### 나. 특수건강진단

- 1) 직업병의 직접 발생원인인 유해인자(181종)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등의 보좌를 받아 결정
- 2)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3) 검사항목 :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은 시행규칙 별표24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4) 실시방법

- ① 제1차 검사항목은 건강진단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실시
- ②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 ·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차 검사항목 검사 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 5)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 ① 시행규칙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
- ② 시행규칙 별표22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와 관련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첨부2 참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인자〉

유해인자분류		종류
가.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 및 일칼리류	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금속기공유	1종
나. 분진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석면분진	7종

유해인자분류		종류
다.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8종
라. 야간작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종

#### 6) 실시시기

: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두 번째 특수건강진단 부터의 실시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 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	사염화탄소 ·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0 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0 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기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7) 실시주기 일시 단축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 및 특수 · 수시 · 임시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헌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1/2로 단축하여야 함

##### 다. 배치전건강진단

- 1)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 2) 면제대상

: 최근 6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 ※ 배치전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해당 유해인자에 한함)

## 라. 수시건강진단

-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신속한 건강평가 및 당해 유해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

## 2) 실시시기

- ① 수시건강진단 대상근로자가 직접 또는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수시 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 ②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가 당해 수시 대상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한 때

## 3) 면제대상

: 사업주가 수사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 또는 건의 받았으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수사건강진단의 실시가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사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임시건강진단

- 1)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 ①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법 제135조제1항)

- 3)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시행규칙 제207조제2항, 제3항)

#### 바. 건강관리구분 판정기준

#####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 구분	건강관리 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 <sub>1</sub>	직업병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 <sub>2</sub>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진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건강관리 구분	건강관리 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sub>N</sub>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 <sub>N</sub>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진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 건강관리 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이 지나도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 4. 건강진단 비용

- 가. 일반건강진단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함
- 나.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 비용 : 사업주 부담

#### 5. 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 가. 사업주에게 송부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시행규칙 제209조 3항)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별지제84호 서식), 특수, 배치전, 수시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표  
(별지제85호 서식)

#### 나. 근로자에게 교부

: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시행규칙 제209조제1항)

#### 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보고

1)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 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

(단, 전산입력자료를 공단에 송부한 경우는 제외)(시행규칙 제209조제4항)

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건강진단을 한 기관은 사업주 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함(시행규칙 제209조제5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②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④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⑤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⑥ 그 밖에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6. 건강진단결과의 보존(시행규칙 제241조제2항)

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함) : 5년간 보존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 30년간 보존

#### 4 과태료 - 시행령[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7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 당	10	20	30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 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4호		500	5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00	300	500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300	300	300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5호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  300	150  300	300  300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5	10	15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근로자나 사업 주에게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통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5호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50  300	150  300	300  300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일반건강 진단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 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5호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50  300	150  300	300  300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0	500	500

## 5 관련 자료

시행령 중,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시행규칙 중,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별표 24]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2019-27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2016-32호)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137호)



## 24. 근로자의 건강관리, 건강증진지도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제8호〈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제1항제9호〈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1호〈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훈령·예규	고용노동부고시 2020-19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근로자건강센터 관련 내용 포함)〈2020.1.7.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2020-19호 별지 서식〈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
기타	고시 별지서식〈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

### 2 용어 정의

- 건강증진 : 개인이 지니고 있는 건강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생활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건강향상을 도모하는 것
-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 사업주가 보건지도, 운동지도, 영양지도, 심리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활동
- 건강증진운동지도자 : 근로자의 건강증진운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운동을 지도하는 자

### 3 법규 요약

#### 1.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 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짐
- 나. 시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및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및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 3-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 고시2020-19호) 요약

- 적용범위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
- 사업장의 건강증진운동의 추진체제, 참여방법

### 가.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 시행

- 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 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
  - 3)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 4)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 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 시설 · 장비의 확보
  - 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
  - 7)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활동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 나. 건강증진활동의 추진체제

- 1)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의 총괄부서 및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를 정해야 함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심의
- 3)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부서별 실무 담당자를 정하고, 그 담당자와 건강증진활동 추진자가 협력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에 관한 실시체제를 확립
- 4) 사업장에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활동추진자와 영양사가 협력하여 영양개선활동 추진
- 5) 건강증진활동추진 관련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 6) 외부 건강증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운동 참여

: 건강증진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

### 라. 참여방법

: 건강증진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별지 서식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신청서>를 안전보건공단 산하 관할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에게 제출함

## 3. 지원 및 혜택

### 가. 정부의 지원

- 1)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정책의 수립 · 집행 · 조정
  - 2)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을 위한 교육 · 홍보,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 3)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지도 · 감독
- ※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원사업 시행

### 나. 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원 : 안전보건공단

- 1) 건강증진운동 시행방법의 지도, 건강증진운동 관련 자료의 제공, 체력측정 실시 지원
- 2) 건강증진운동 추진계획의 작성 · 수행 등에 필요한 지원
- 3)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강증진운동에 관한 교육, 전문가 양성 · 지도 · 위촉 등 지원

- 4)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 체력측정 실시를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지도를 할 수 있음
  - 5)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을 위한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구조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보조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6)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교육·상담 등 보건관리지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다. 건강증진운동 우수 실시 사업장에 대한 혜택
- 1) 이사장은 건강증진활동 우수 실시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건강증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건강증진 업무와 관련한 해외 연수지원 또는 정부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2) 건강증진운동 우수 실시 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증진운동 유공자 및 건강증진운동 우수 부서에 대하여 표창 또는 승급 등의 자체포상을 실시하는 등 건강증진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라.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 지원 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함
4. 추진기법 보급 및 지도자 양성 등
- 가. 건강증진활동의 추진기법 보급
- 1) 건강증진활동 추진기법 및 관련자료의 개발·보급
  - 2) 건강증진활동 모델 개발
  - 3) 건강증진활동 우수 실시 사업장 발굴 및 홍보
  - 4)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지도자에 대한 교육
  - 5) 건강증진활동 전문가의 양성
  - 6) 분야별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및 전문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 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건강증진활동 전문가의 양성
-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활동 전문기를 양성함
  - 2) 건강증진활동 참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 지도에 적합한 자를 선별하여 공단 산업안전교육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담당기관의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3) 공단 이사장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증진업무와 관련한 전문교육을 실시

#### 4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2020-19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2020.1.7.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2020-19호 별지, 서식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

## 25.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제5호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1항제10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9. 12. 26., 일부개정]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6조(정의)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제664조(작업조건)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제666조(작업자세 등)
훈령 예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기타	KOSHA GUIDE H-9-2018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KOSHA GUIDE 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KOSHA GUIDE G-119-2015 인력운반작업에 관한 안전기아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2) (2019.8.8.) 외 연구편람 다수

### 2 용어 정의

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 작업방법,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럽거나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을 말함
2. 조사자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 요인조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관리자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를 말함
3. 근골격계질환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 3 법규 요약

#### 1. 유해요인조사 시기

- 가. 정기유해요인조사 : 매 3년 이내
- 나. 신설되는 사업장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다. 수시유해요인조사

- 1)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사례1)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각각에 대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또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
- 사례2)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자 발생시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함.

#### 2. 유해요인조사 대상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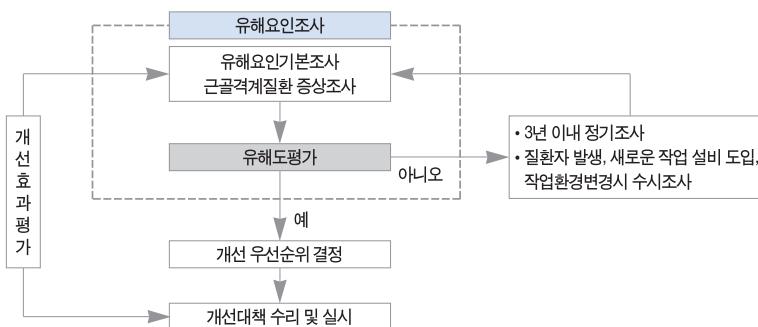
#### 3. 유해요인조사 내용 및 방법

##### 가. 유해요인조사 내용

- 1) 작업장 상황조사  
: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2) 작업조건조사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반복성,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등)
- 3)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 나. 유해요인조사 방법

- :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



#### 4. 유해요인조사자

- 가. 보건관리자(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업무)  
 단.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외에 부서별 유해요인조사자를 정해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나.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 다만, 균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균골격계질환예방관리추진팀에서 수행할 수 있음.  
 다.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자에게 유해요인조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균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균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추진팀이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이를 생략.

**라. 사업장 내부에서 선정이 어려울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 가능**

※ 유해요인조사 관련 대한산업보건협회 권역별 연락처

인천센터 환경위생팀 032-430-9300 (서울, 경기, 인산, 인천, 강원)

전북센터 환경위생팀 063-225-1242 (대전, 충북, 천안, 광주, 전북, 제주)

대구센터 환경위생팀 053-592-4901 (대구, 경북, 부산, 창원, 울산)

#### 5. 유해요인의 개선과 사후조치

- 가. 사업주는 개선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수립  
 나. 해당근로자에게 알림  
 다. 사업주는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 · 조언을 들을 수 있다.

#### 6. 문서의 기록과 보존

가. 기록 보존 자료명

- 1)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2) 균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 3) 개선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나. 보존기간

- 1) 근로자 개인의 신상관련 : 5년
- 2) 시설, 설비와 관련된 자료 : 작업장 내에 시설, 설비가 존재하는 동안

#### 7. 중량물 표시 및 조치

- 가. 대상 :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나. 방법 및 조치

- 1)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 할 것

다. 인력운반중량 권장기준(KOSHA GUIDE G-119-2015 '인력운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인력운반중량 권장기준

작업형태	성별	연령별 허용 권장기준(kg)			
		18세 이하	19~35세	35~50세	51세 이상
일시작업 (2회/hour)	남	25	30	27	25
	여	17	20	17	15
계속작업 (3회/hour)	남	12	15	13	10
	여	8	10	8	5

## 4 관련 자료

### 1. 고시

- 가.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나. 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2. 지침(안전보건공단)

- 가. KOSHA GUIDE H-9-2018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 나. KOSHA GUIDE 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 다. KOSHA GUIDE G-119-2015 인력운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 3. 근골격계질환 예방업무편람(2014)

## 26.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39조(보건조치) 제1항제5호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1항제10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훈령 예규 고시	
기타	KOSHA GUIDE 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KOSHA GUIDE 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KOSHA GUIDE H-68-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조치에 관한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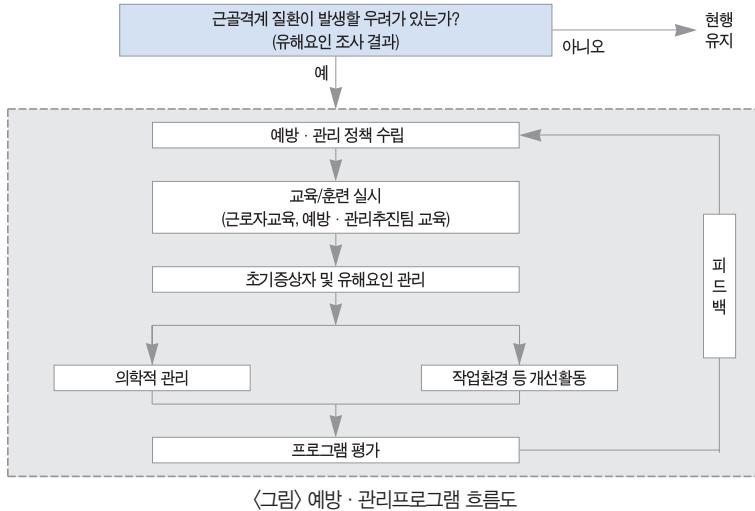
### 2 용어 정의

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 3 법규 요약

- 대상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체 : 사업주
-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 도입전 준비사항
  - 사업주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함
  - 인간공학, 작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 가능

#### 4. 업무흐름도



#### 5.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추진팀 구성

〈표1〉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예방·관리 추진팀의 구성(예시)

중·소규모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그가 위임하는 자</li> <li>관리자(예산결정자)</li> <li>정비·보수담당자</li> <li>보건·안전담당자</li> <li>구매담당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규모 사업장 추진팀원 이외 다음의 인력을 추가함</li> <li>기술자(생산, 설계, 보수기술자)</li> <li>노무담당자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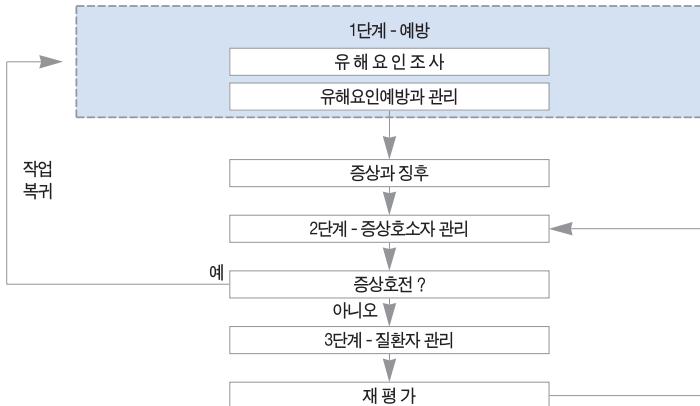
##### 나. 예방관리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노사의 역할

: 사업주의 역할, 근로자의 역할, 예방관리추진팀의 역할, 보건관리자의 역할

##### 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

: 근로자, 예방관리추진팀

- 라. 유해요인 조사
- 마. 유해요인의 개선 등
  - : 공학적 개선, 관리적 개선, 개선계획서 작성의 시행
- 바. 의학적관리
  - : 증상호소자 관리, 질환자 관리



- 사. 예방관리프로그램의 평가
- 아. 문서의 기록과 보존

#### 4 관련 자료

1. KOSHA GUIDE 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2. KOSHA GUIDE 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3. KOSHA GUIDE H-68-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 27.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제1항제2호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제1호
훈령 예규 고시	
기타	KOSHA GUIDE H-67-2012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지침

### 2 용어 정의

#### 1. 직무스트레스 요인(Job stressor)

: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람(요구)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반응을 초래하는 업무적 요인

### 3 법규 요약

#### 1. 평가대상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정밀 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2. 평가도구

가. 측정도구 :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안전보건공단 개발)

나. 측정방법 : 자기기입식

#### 3. 예방조치

가. 작업환경 · 작업내용 ·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 · 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나. 작업량 ·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다.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라.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마.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바.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4 관련 자료

KOSHA GUIDE H-67-2012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지침

## 2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제1항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제6호
훈령 예규 고시	
기타	[KOSHA GUIDE H-200-2018]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 2 용어 정의

#### 1.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직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예측해보기 위한 평가

### 3 법규 요약

#### 1.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

- 가. 기본주기 : 사업주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실시  
나. 주기단축
  - 1)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 : 1년 1회 이상
  - 2) 기초질환 내지 기존질환이 발견된 근로자 :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권고하는 시기

#### 2. 평가자

- 가.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 평가 :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
- 나. 업무적합성 평가 : 의사인 보건관리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다. 사후관리 :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의사의 지사를 받는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영양사, 건강증진 지도사

#### 3. 평가절차

- 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필수항목, 선택항목
- 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에 따른 구분 : 건강군,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 다. 업무적합성 평가 : 통상근무, 조건부 근무, 병가 또는 휴직, 작업전환
- 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 생활습관개선, 질병관리, 근무상조치, 작업 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 4 관련 자료

[KOSHA GUIDE H-200-2018]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 29. 청력보존프로그램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2019.12.26〉
훈령 예규 고시	
기타	KOSHA GUIDE H-61-201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 시행지침 KOSHA GUIDE H-160-2014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2 용어 정의

#### 1. 청력보존 프로그램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 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 · 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 ·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5항)

### 3 법규 요약

#### 1. 평가대상

- 가.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 나.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한 사업장

#### 2. 프로그램 절차

- 가. 소음노출평가
- 나. 공학적 대책
- 다. 청력보호구 지급 · 착용
- 라. 청력검사 및 평가
- 마.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
- 바. 프로그램의 평가
- 사. 프로그램의 기록 · 보관

### 4 관련 자료

KOSHA GUIDE H-61-201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 시행지침  
KOSHA GUIDE H-160-2014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30. 호흡기보호프로그램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2019.12.26)	
훈령 예규 고시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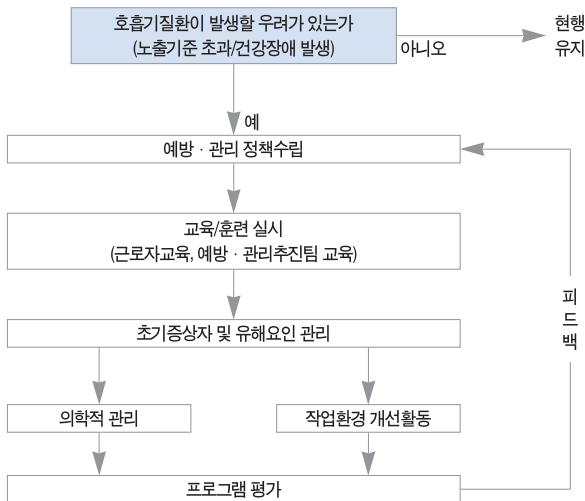
### 2 용어 정의

1. 분진 :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흘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
2. 분진작업 : 고체를 파쇄, 분쇄, 연마, 절삭하는 작업공정이나 토석, 암석, 광물을 하역하는 작업 공정에서 공기중에 있는 부유분진에 노출되어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 (25개 작업)
3. 호흡기보호프로그램 :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금 및 적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 진단, 기록 · 관리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 ·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 3 법규 요약

1. 대상 :
  - 가.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 나.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한 사업장
2. 주체 : 사업주

### 3. 업무흐름도



가. 분진노출평가 : 작업환경측정

나. 공학적 개선대책

- 1) 분진발생원의 격리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작업관리대책
  - 2) 작업관리대책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다.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사용
- 라. 호흡용 보호구의 유지 및 관리
- 마.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바. 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의 기록 보존

## 31.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8조~제625조 (2019.12.26 일부개정) [별표18] 밀폐공간
훈련 예규 고시	
기타	KOSHA GUIDE H-80-2018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X-68-2015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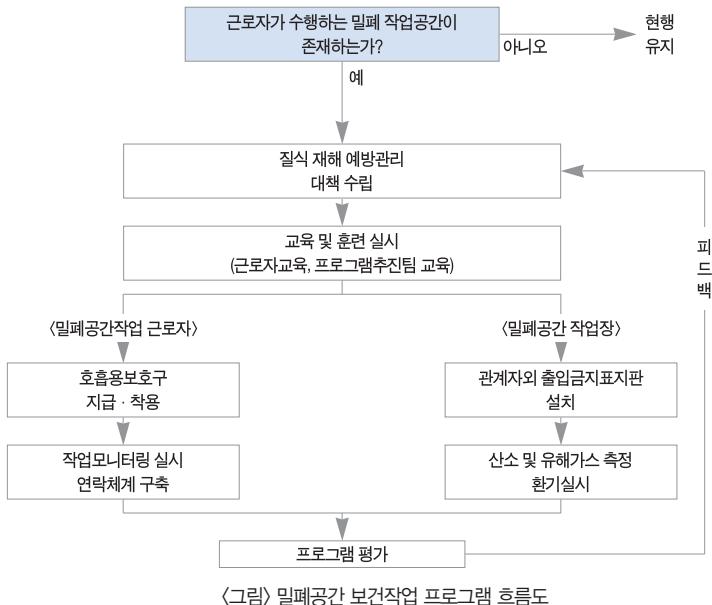
### 2 용어 정의

- 밀폐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유해가스 :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탄산가스·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적정공기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
- 산소결핍 :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산소결핍증 :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

### 3 법규 요약

- 대상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주체 : 사업주
- 밀폐공간 프로그램
  - 작업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평가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의 기록 보존

#### 4. 업무흐름도



#### 4 관련 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별표18] 밀폐공간

KOSHA GUIDE H-80-2018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X-68-2015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32. 위험성평가

### 1 관련 법규

<b>산업안전보건법</b>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b>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b>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제1항제6호 :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제2호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제1항제1호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제1항제1호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b>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b>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 보존)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제1조제2항 :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 피해 최소화 대책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2항제4호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협의사항 중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b>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b>	
<b>훈련 예규 고시</b>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166호)
<b>기타</b>	

### 2 용어 정의

#### 1.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 · 기구 · 설비, 원자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한 후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2. 유해 · 위험 요인(Hazard)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 3. 위험성(Risk)

: 유해 · 위험요인(Hazard)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

### 3 법규 요약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해야 함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4) 그 밖에 위험성 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시행규칙 제37조)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2013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안전보건 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시행. 위험성평가 인정 시 또는 위험성 평가 와 관련된 안전보건 활동 계획을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료 인하,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4 관련 자료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예규 제166호)

## 33. 서류의 보존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5호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5호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항제6호 지정취소사유: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93조(식면해제 · 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2호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6조(직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6호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4호: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관리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 보존)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제241조(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기타	

### 2 용어 정의

### 3 법규 요약

#### 1. 사업주가 보존할 서류

보존기간	서식내용
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li> <li>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li> </ul>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li> <li>건강진단 결과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li> </ul>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li> <li>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li> <li>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li> <li>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li> <li>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li> <li>건강진단에 관한 서류</li> <li>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li> </ul>
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회의록
공통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 연장 가능

#### 2. 기관 등이 보존할 서류

주체	보존기간	서식내용
지정측정기관	3년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지도사	5년	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설면해체 · 제거업자	30년	설면해체 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일반설면조사를 한 건축물 · 설비 소유주 등 해체 · 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일반설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	3년	안전인증 ·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안전인증을 받은 자	3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년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	2년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안전관리 · 보건관리 전문기관	3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li> <li>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li> </ol>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음

#### 4 과태료 – 시행령[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보존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각 서류당)	법 제175조 제6항제18호		30	150	300

#### 5 관련 자료

##### 시행규칙 중,

1.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별지 제1호서식]
2.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3.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별지 제3호서식]
4. 산업재해조사표 [별지 제30호서식]
4.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별지 제81호서식]
5.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보고서 [별지 제57호 서식]
6.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하반기) [별지 제82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하반기)  
[별지 제83호서식]
7.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4호서식]
8.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별지 제49호서식]
9.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별지 제53호서식]

## 첨부-1 시행규칙[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1. 화학적 인자

#### 가. 유기화합물(114종)

-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 7)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 8)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 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 1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 1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 13)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 14)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 15)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 16)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 17) 1,4-디옥산(1,4-Dioxane; 123-91-1)
-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 19)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 20)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 21)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 22)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 23)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 24)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 25)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 26) p-디하이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 27) 메탄올(Methanol; 67-56-1)
- 28)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 2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 30)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 31)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 32)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 33)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 34)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 35)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 36)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 37)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 38)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 39)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 40)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 41)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 42)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 43) 벤젠(Benzene; 71-43-2)
- 44)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 45) n-부탄올(n-Butanol; 71-36-3)
- 46) 2-부탄올(2-Butanol; 78-92-2)
- 47)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 48)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 49)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 50)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 51)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 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 53)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 54)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 55)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 56) 스티렌(Styrene; 100-42-5)
- 57)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 58)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 59)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 60)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 61)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 62)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 63) 아세톤(Acetone; 67-64-1)
- 64)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 6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 66)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 67)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 68)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 69)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 70)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 71)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 72)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 73)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 74)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 75)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 76)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 77)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 78)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 79)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 80)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
- 81)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 82)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 83)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 84)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 85)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 86)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 87)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 88)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 89)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 90) 크레졸(Cresol; 1319-77-3 등)
- 91) 크실렌(Xylene; 1330-20-7 등)
- 92)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 93) 1,1,2,2-테트리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 94)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 95) 톨루エン(Toluene; 108-88-3)
- 96)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 97)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 98)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 99)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 100)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 10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 102)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 103)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 104) 페놀(Phenol; 108-95-2)
- 105)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 10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 107)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
- 108)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 109) 피리딘(Pyridine; 110-86-1)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11) n-헥산(n-Hexane; 110-54-3)

112) n-헵탄(n-Heptane; 142-82-5)

113)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14)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5) 1부터 114)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나. 금속류(24종)

1) 구리(Copper; 7440-50-8) (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

(Nickel and its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6) 백금[7440-06-4] 및 그 가용성 염(Platinum and its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8)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분진, 흄)

9)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 (분진, 흄)

10)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11)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2)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3)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4)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분진, 흄)

15)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6)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7) 은[7440-22-4] 및 그 가용성 화합물(Silver and its soluble compounds)

18)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수소화 주석은 제외한다)

20)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21)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2)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3) 크롬[7440-47-3] 및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4) 텉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5) 1부터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 산 및 일칼리류(17종)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 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 8)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 11)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 15) 초산(Acetic acid; 64-19-7)
-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
-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 1) 불소(Fluorine; 7782-41-4)
- 2) 브롬(Bromine; 7726-95-6)
-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 7) 염소(Chlorine; 7782-50-5)
- 8) 오존(Ozone; 10028-15-6)
-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 13) 포스겐(Phosgene; 75-44-5)
-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1)  $\alpha$ -나프탈이민[134-32-7] 및 그 염( $\alpha$ -naphthylamine and its salts)
-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 3) 디클로로벤자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2. 물리적 인자(2종)
-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나.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 1) 규산(Silica)
- 가) 석영(Quartz; 14808-60-7 등)
- 나)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 가)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 나) 운모(Mica; 12001-26-2)
- 다)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 라) 헐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 마) 흑연(Graphite; 7782-42-5)
-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 나. 곡물 분진(Grain dusts)
- 다. 면 분진(Cotton dusts)
- 라. 목재 분진(Wood dusts)
- 마.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 바. 용접 흙(Welding fume)
- 사. 유리섬유(Glass fibers)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첨부-2 시행규칙[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1. 화학적 인자

#### 가. 유기화합물(109종)

- 1) 가솔린(Gasoline; 8006-61-9)
- 2) 글루타르알데하이드(Glutaraldehyde; 111-30-8)
-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 7)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 8)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 10)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 11)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 1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 16) 1,4-디옥산(1,4-Dioxane; 123-91-1)
- 17)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 18)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 19)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 20)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 22)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 23)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 24) p-디하이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 25) 마절다(Magenta; 569-61-9)
- 26) 메탄올(Methanol; 67-56-1)
- 27)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 28)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 29)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 30)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 31)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 32)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 33)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 34)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 35)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 36)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 37)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 38)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 39)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 40) 무수 푸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 41) 벤젠(Benzene; 71-43-2)
- 42) 벤지딘 및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92-87-5)
- 4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 44) n-부탄올(n-Butanol; 71-36-3)
- 45) 2-부탄올(2-Butanol; 78-92-2)
- 46)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 47)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 48)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 49)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 50)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 51)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bis(Chloromethyl) ether; 542-88-1)
- 52)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 53)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 54) 스티렌(Styrene; 100-42-5)
- 55)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 56)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 57)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 58)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 59)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 60)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 61) 아세톤(Acetone; 67-64-1)
- 62) 아세트알데하이드(Acetaldehyde; 75-07-0)
- 63) 아우라민(Auramine; 492-80-8)
- 6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 65)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 67)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 68)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 69)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 7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 71)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 72)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 73) 에틸레이민(Ethyleneimine; 151-56-4)
- 74)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 75)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 76)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s; 53469-21-9, 11097-69-1)
- 77)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 78)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 79)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 80)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 81)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 82)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 83) 콜타르(Coal tar; 8007-45-2)
- 84) 크레졸(Cresol; 1319-77-3 등)
- 85) 크실렌(Xylene; 1330-20-7 등)
- 86)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 87)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 88) 테레빈유(Turpentine oil; 8006-64-2)
- 89)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 90)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 91) 툴루엔(Toluene; 108-88-3)
- 92) 툴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 93) 툴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 9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 95)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 96)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TCE); 79-01-6)
- 97)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 98)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 99) 페놀(Phenol; 108-95-2)
- 100)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 101)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 102)  $\beta$ -프로피오락톤( $\beta$ -Propiolactone; 57-57-8)
- 103)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91-15-6)
- 104) 피리딘(Pyridine; 110-86-1)
- 105)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 106) n-헥산(n-Hexane; 110-54-3)
- 107) n-헵тан(n-Heptane; 142-82-5)
- 108)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 109)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 110) 1)부터 109)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나. 금속류(20종)

- 1) 구리(Copper; 7440-50-8)(분진, 미스트, 흥)
-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5) 사일킬납[Tetraalkyl lead; 78-00-2 등)
- 6)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분진, 흥)
- 7)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분진, 흥)
- 8)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 1327-53-3)
- 9)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 10)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 11)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 12)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분진, 흥)
- 13)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 14)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 15)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 16) 자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 17)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 18) 코발트(Cobalt; 7440-48-4)(분진, 흥)
- 19)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
- 20) 텉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 21) 1부터 20)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 1)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 2)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 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 4)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 6) 질산(Nitric acid; 7697-37-2)
-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 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1) 불소(Fluorine; 7782-41-4)
- 2) 브롬(Bromine; 7726-95-6)
-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 ride; 98-07-7)

-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 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 2. 분진(7종)

- 가. 곡물 분진(Grain dusts)
- 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 다. 면 분진(Cotton dusts)
- 라. 목재 분진(Wood dusts)
- 마. 용접 흙(Welding fume)
- 바.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 사.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 3. 물리적 인자(8종)

-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  
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 라. 고기압
- 마. 저기압
- 바. 유해광선
  - 1) 자외선
  - 2) 적외선
  - 3)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 4. 야간작업(2종)

-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하는 경우
-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첨부-3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1. 1. 1.] 제4호나목

[시행일: 2021. 1. 16.] 제4호러목(법 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트목, 프목, 흐목, 기목, 니목, 디목, 리목, 미목, 비목, 시목, 이목, 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19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증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기증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기증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팔호 안의 공사금 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 4항제1호		1,000	1,000	1,000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 4항제2호		1,000	1,0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마.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 제 1항제1호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바.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 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500	500	500
사.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	500	500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안 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회당)	50	250	500
자.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시험을 성실히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차.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카.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 당	50	250	500
파.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하.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거.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너.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법 제175조 제6항제1호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더.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3호		50	250	500
러.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의 요청 사항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2호		30	150	300
마.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거나 설치·부착된 안전보건 표지가 같은 향에 위배되는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0	30	50
바.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5	10	15
서.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600	1,000
어.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저.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4호		30	150	300
처.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30	150	300
커.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600	1,000
터.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파.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	250	500
하.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5	10	15
고.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30	150	300
노.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4호		1,000	1,000	1,000
도.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제1호	1)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4호	1)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12)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모.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보.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소.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4호		50	250	500
오.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 제2항제2호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조.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5조 제3항제2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1,500	1,500	1,500
초.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0	500	500
코. 법 제6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토. 법 제6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포.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호.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0	5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구.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누. 법 제7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두. 법 제7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거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루. 법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무.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면,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면,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면,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면, 1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면, 3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면, 6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600만원)
		2) 50%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면, 1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면, 2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면, 3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부. 법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수. 법 제7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만 해당한다)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우.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자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6호		200	250	300
주. 법 제75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 수급인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추.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500	700	1,000
쿠.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 당)	10	20	50
투.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500	700	1,000
무.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2항제1호		1,500	2,000	3,000
후. 법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5호		500	700	1,000
그. 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7호		300	300	300
느.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안전인증대상별)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	500	1,000
드.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인증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자율인증확인대상별)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르.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200	6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무.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브.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스. 법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600	1,000
으. 법 제10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 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즈.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8호		30	150	300
초. 법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30	150	300
크.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8호		300	300	300
트.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5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가 변경 시기를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프. 법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6호		500	500	500
흐. 법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7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 제공하는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시 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 제공하는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양도 · 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제공한 시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10	20	50
기. 법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6항제9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 수입한자가 변경 시험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공하지 않은 시업장 1개소당)	50	100	300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 · 제공자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공하지 않은 시업장 1개소당)	10	20	30
니. 법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대체자료로 적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8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 수입하는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한 경우	500	5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 수입한자가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가 아닌 명칭 및 흡수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디. 법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9호		500	500	500
리. 법 제112조제10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0호		100	200	500
미.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1호		500	500	500
비.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 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12호		100	200	500
시. 법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3호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 소당)	100	200	500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 소당)	100	2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10	20	50
이. 법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0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자. 법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6항제11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으로 양도 · 제공 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양도 ·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 · 제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 제공한 경우(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양도 · 제공받은 시업장 1개소당)	50	100	300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 · 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치.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식면 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 제8항제12호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200	300
카. 법 제1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 제1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한다)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1,000	1,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2) 그 밖의 경우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 다면 해당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500 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 만원 으로 한다.	3,000	5,000
티. 법 제1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피. 법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3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50	200 100	300 150
하. 법 제1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한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5	10	15
갸.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4호		100	200	300
댜. 법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랴.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 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6호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 당	20	5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마.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 노동부분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3호		100	300	500
바.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4호		500	500	500
사. 법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 300	150 300	300 300
야. 법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5호		100	300	500
자. 법 제1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00	300	500
차.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7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4호		500	500	500
타. 법 제1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00	300	500
파. 법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300	300	300
하. 법 제1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5호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 300	150 300	3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거.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5	10	15
녀. 법 제1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 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 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5호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녀. 법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5호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300	300	300
려. 법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0	500	500
며. 법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 제3항제3호	1) 사업주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5	10	15
버. 법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75조 제3항제4호		1,500	1,500	1,500
서. 법 제1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요. 법 제149조를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6호		300	300	300
초. 법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8호		1,000	1,000	1,000
쿄. 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툐.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7호		300	300	300
표. 법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당)	법 제175조 제6항제18호		30	150	300

## 첨부-4 벌칙(법 제167조~174조)

###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167조)

법 제38조(안전조치)제1~3항, 제39조(보건조치)제1항 또는 제 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기중한다.

###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68조)

법 제38조(안전조치)제1~3항, 제39조(보건조치)제1항,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증지), 제54조(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1항,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제1항, 제118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제1항,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제1항 또는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제4항 후단,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제3항,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증지 조치)제1항 또는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69조)

가.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제1항 후단,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제2항, 제84조 (안전인증)제1항,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제1항,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제3항,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제1항,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제1항 또는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제1항을 위반한 자

나.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제1항 후단, 제46조(공정 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제5항,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제1항,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제2항,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제4항, 제119조(석면조사)제4항 또는 제131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다.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3항 또는 같은조 제4항 후단(제59조(도급의 승인)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라. 제84조(안전인증)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마. 제93조(안전검사)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바.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70조)

가.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나.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 다.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教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 라.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제1항,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제2항·제3항, 제92조(자율 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제1항, 제141조(역학 조사)제4항 또는 제162조(비밀 유지)를 위반한 자
- 마.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제4항 또는 제92조(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바. 제101조(성능시험 등)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5.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71조)

- 가.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제1항·제2항,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1항,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제2항·제3항,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2항, 제109조(중대한 건강장애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2항 또는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 나.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제4항,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4항 또는 제109조(중대한 건강장애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라.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6.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72조)

-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7. 양벌규정(법 제173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벌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내용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 가. 제167조제1항(안전·보건 조치 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의 경우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 8.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법 제174조)

- 가. 법원은 제38조(안전조치)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보건조치)제1항 또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 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다.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 라. 수강명령의 내용
-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마.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네트워크

## 본부

###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06667) 서울특별시 서초구 흐령로 179 (혜산빌딩)

감사실	TEL. 02)2046-0491~3	FAX. 02)585-0164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팀 TEL. 02)2046-0411~3	FAX. 02)585-1584
	대외홍보팀 TEL. 02)2046-0415,7,8	FAX. 02)522-0933
	전산정보팀 TEL. 02)2046-0451~8	FAX. 02)522-0933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TEL. 02)2046-0421~7	FAX. 02)585-1584
	노사협력팀 TEL. 02)2046-0471~3	FAX. 02)585-1584
	재무관리팀 TEL. 02)2046-0443,5,6	FAX. 02)522-0933
사업지원본부	자산운용팀 TEL. 02)2046-0431~3	FAX. 02)522-0933
	보건관리팀 TEL. 02)2046-0531~4	FAX. 02)585-0163
	환경위생팀 TEL. 02)2046-0541~4	FAX. 02)585-0163
교육사업본부	건강진단팀 TEL. 02)2046-0551~3	FAX. 02)585-0163
	교육사업팀 TEL. 02)2046-0511~5	FAX. 02)522-0163
	교육개발팀 TEL. 02)2046-0500~2, 9	FAX. 02)585-0163

## 지역본부·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코오롱테크노밸리 2층)	TEL. 02)866-9507	FAX. 02)858-2175
경인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 미디어시티빌딩 5층	TEL. 031)267-4400	FAX. 031)267-4416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11653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42	TEL. 031)828-3800	FAX. 031)877-5581
	안산산업보건센터 154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86 신우프라자 2~5층	TEL. 031)498-1063~6	FAX. 031)498-1067
대전충남복지역 본부	강원산업보건센터 2436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2 7, 8층(근화동, 삼성타워)	TEL. 033)254-4632	FAX. 033)242-4632
	인천산업보건센터 2214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12, 2층(주안동)	TEL. 032)430-9300	FAX. 032)421-1633
	대전충남복지역본부 343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03	TEL. 042)933-3200	FAX. 042)933-5300
광주전남복지역 본부	천안산업보건센터 3147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6~8, 3층	TEL. 041)536-6900	FAX. 041)542-2250
	충북산업보건센터 2844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7	TEL. 043)263-7137~9	FAX. 043)267-7347
	광주전남복지역본부 622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414	TEL. 062)956-9012~5	FAX. 062)956-9017
대구경북지역 본부	전북산업보건센터 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30	TEL. 063)225-1242	FAX. 063)225-8104
	군산산업보건센터 54001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2층	TEL. 063)731-1242	FAX. 063)468-8104
	제주산업보건센터 63309 제주시 첨단로3길, 10번지 2층	TEL. 064)723-4396	FAX. 064)723-4397
부산경남지역 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427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40	TEL. 053)592-4901~4	FAX. 053)592-4905
	경북산업보건센터 3845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28	TEL. 053)856-1211	FAX. 053)856-1206
	부산경남지역본부 462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39(동하빌딩)	TEL. 051)508-6088~9	FAX. 051)508-6092
부산경남지역 본부	남부산산업보건센터 46762 부산광역시 구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21, 4~6층	TEL. 051)710-6888	FAX. 051)271-6862
	울산산업보건센터 44774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64번길 5~14	TEL. 052)275-6322	FAX. 052)275-6323
	창원산업보건센터 5133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2길 38(마산지구유역지역 내)	TEL. 055)295-2461~2	FAX. 055)295-2460
산업보건환경연구원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코오롱테크노밸리 2층)	TEL. 02)3284-5256	FAX. 02)851-2030
한마음힐병원	13815 경기도 과천시 향나루로 4	TEL. 02)586-2415	FAX. 02)582-0524
치악산호텔(연수원)	26304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3371-3	TEL. 033)731-7931	FAX. 033)731-7937
협의회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TEL. 02)586-8584	FAX. 02)586-8586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TEL. 02)586-2667	

# 산업안전보건법 핸드북



---

발행일 : 2020년 3월 1일

발행인 : 김 준 연

발행처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79 혜산빌딩

TEL: 02) 586-2417

FAX: 02) 522-0933

디자인 · 편집 : 팜 파 스 (주)

[www.kiha21.or.kr](http://www.kiha21.or.kr)

---

〈비매품〉



# KIHA GUIDE 2020

[www.kiha21.or.kr](http://www.kiha21.or.kr)



서울시 서초구 흐령로 179(해산빌딩)

☎ 02)586-2412

✉ 02)585-1584